

업계 소식 - 2017년 11월 29일 - 속눈썹 & 눈썹 서비스

이미용위원회에서는 면허소지자들에게 속눈썹 & 눈썹 서비스에 관한 다음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손눈썹 붙이기

속눈썹, 속눈썹 연장제, 속눈썹 스트립을 사람에게 시술할 경우 미용사 및 피부미용사 면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술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c) 미용사 서비스에는 스킨 케어와 네일 케어라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1) 스킨케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a) 페이셜 시술, 화장, 스킨 케어 및 제모제, 핀셋, 또는 왁싱을 이용한 사람 대상의 제모 또는 속눈썹 시술.

속눈썹 파마

속눈썹 파마는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7316** 항에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명시된 미용사와 이발사의 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a) 이발사의 서비스는 다음 서비스의 조합이거나 전체입니다.

(3) 신장, 샴푸잉, 어레인징, 드레싱, 컬링, 웨이빙, 파마, 헤어 릴렉싱 또는 새치 염색 또는 헤어토닉 도포

(b) 미용사의 서비스는 다음 서비스의 조합이거나 전체입니다.

(1) 사람의 헤어를 대상으로하는 어레인징, 드레싱, 컬링, 웨이빙,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파마, 파마, 클렌징, 커팅, 샴푸잉, 릴렉싱, 신장, 탈색, 턴팅, 멧내기 염색, 스트레이트닝, 새치 염색, 헤어토닉 도포,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헤어 미용 또는 그외 헤어 손질.

속눈썹/눈썹 턴팅

미국 식약청(FDA)에서는 속눈썹 또는 눈썹의 영구 염색이나 턴팅을 위한 염료 첨가제가 FDA의 승인을 받은 적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FDA는 콜타르 염료를 함유한 속눈썹 및 눈썹 염색제 수입 경고를 발효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16 편 9 부 989 항에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업 시설 또는 학교에서도 다음 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 FDA, 직업안전위생 관리국, EPA 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FDA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주소로 방문하십시오:
<http://www.fda.gov/Cosmetics/ProductsIngredients/Products/ucm137241.htm>

약품 베이스의 속눈썹/속눈썹 강화제

약품 베이스의 처방 제품을 도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하여 허가한 범위의 시술 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속눈썹이 두껍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처방용 강화제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용위원회에서 발급 받은 면허의 소지자는 사업 및 전문업법 10 장 3 부 7320 항에 의거하여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장은 의료 행위 또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및 전문업법 2050 항에 의하면 의료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에서 환자 또는 피로운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하는 자 또는 시술하기 위해 시도한 자, 광고를 하거나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러한 시스템, 치료 방법 또는 해당 행위 당시에 유효한, 효력을 잃지 않은, 정지 되지 않은, 본 장에서 언급한 인증서가 없이, 즉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취득한 인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사람의 질병, 반점, 기형, 질환, 상처, 장애, 부상, 또는 육체적 정신적인 병증을 치료 시술 처방하는 자는 공공 복리를 침해 죄에 해당되며 최고 천달러(\$1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형법 1170 항의 세부 조항 (h)에 의거하여 최고 일년 동안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거나, 또는 벌금형과 투옥 모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업계 소식은 이전에 게시한 다음의 업계 소식을 대체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 속눈썹 연장; 2015년 7월 - 속눈썹/눈썹 튜빙; 2017년 2월 7일 - 속눈썹 파마